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11.23(수)	(수)	(수)	(수)
금융위 자본시장과 박민우 과장	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장준경 국장		최성규 사무관 (02-2100-2655)	
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임재준 상무 김도연 상무		유가증권시장본부 이용국 상무		김신 팀장 (02-3145-7590) 박정태 팀장 (02-3145-7560)	
금투협 증권파생서비스본부 오무영 본부장		김태영 부장 (051-662-2780) 김윤생 부장 (051-662-2690) 정석호 부장 (051-662-2820) 김경학 부장 (02-3774-9360)		김중흥 부장 (02-2003-9160)	

제목 :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ELS 등 파생결합증권 시장을 건전화 하겠습니다.

- ◇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**상장절차 간소화, 신상품 출시, 진입규제 정비** 등 공급·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
- ◇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**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체계**를 강화하고, 다양한 대체 투자상품 활성화 추진

I. 추진배경

- 파생시장은 다양한 위험관리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고도화와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
 - 다만, 높은 레버리지 거래*라는 특성상 대규모 손실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상존
 - * 현물시장과 달리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 실현 가능

⇒ '96년 설립 이래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파생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숙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

II. 파생상품시장 현황 및 평가

1. 장내 파생상품시장

- 과거 특정 주가지수상품 위주로 **과열양상**을 보이던 시장이 다양한 건전화 조치에 따라 '12년부터 안정화되는 모습
 - * 주가지수 파생상품 개인 활동계좌 수(만개) : ('05) 1.5 → ('11) 3.0 → ('16.6) 1.6
 - ** 일평균 거래회전율(거래량/미결제약정 계약 수) : KOSPI200 선물 : ('05) 1.84 → ('10) 3.32 → ('16.上) 1.19
KOSPI200 옵션 : ('05) 2.98 → ('11) 4.05 → ('16.上) 1.26
- 다만, **글로벌 파생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품 다양성 제고 등 질적 내실화를 강화**할 필요
 - 해외시장에 비해 여전히 주가지수 파생상품 비중이 높고*, 상장상품 수가 적으며**, 높은 거래승수*** 등으로 세밀한 헤지가 어려운 측면
 - *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량 비중('15년, %) : 한국 68.9, 미국 30.8, 유럽 35.7
 - ** 장내파생 상장상품 수('15말, 개) : 한국 31, 미국 1,441 유럽 586, 일본 72 등
 - *** 국가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승수 : 한국 50만원, 미국 250달러(약 27만원), 유럽 10유로(약 1.2만원), 일본 1,000엔(약 1.1만원) 등
 - 투자자 진입규제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, 다수 외국 투자자의 통합주문을 위한 인프라도 미흡한 수준

2. 장외 파생상품시장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담에서 **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체계* 마련**을 합의하고 각국에서 도입 추진 중
 - * ①중앙청산소(CCP)를 통한 청산 ②거래정보저장소(TR) 보고 의무화 ③증거금 규제 ④전자거래플랫폼 도입
- 우리나라는 **CCP 의무청산('14.6, 원화 IRS), TR 기관선정('15.8, 거래소)** 등을 추진하였으나, 증거금 규제 및 전자거래플랫폼 등에 대한 세부 도입방안 논의는 미진

3. 파생결합증권 시장

-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급증*함에 따라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** 필요성 증대
 - * ELS·DLS 발행잔액(조원) : ('10년말) 22.3 → ('16.10말) 101.2
 - **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약 57%이며,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약 1.1억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음

III. 개선 방안

< 기본 방향 >

- ◇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·수요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비
 - ※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에 집중하고, 과거와 같은 시장 과열양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양적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는 지양
- ◇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논의 동향에 부합하도록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
- ◇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증권사 및 시장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
 - 파생상품 투자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상품 활성화

		현황 및 문제점	개선 방안
장내 파생 상품 시장	공급 측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내상품 다양성 부족 • 높은 거래수수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장절차 간소화 · 상품 다양화 • 거래수수 등 합리화
	수요 측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직적 투자자 진입규제 • 해외투자자 거래 불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맞춤형 진입규제 마련 •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
장외 파생 상품 시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외 파생상품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글로벌 공조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CP 적용대상 확대, TR 제도화 등 글로벌 논의 동향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
파생 결합 증권 시장	ELS · DL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권사 · 시장리스크 확대 •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, 운용자산 구분관리 • 적합성 원칙 내실화, 녹취의무,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등
	ELW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LP(발행사 등)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문제 지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별주식옵션 활성화 등을 통해 거래수수 흡수 (⇒ 장내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 강화)
	ETN · 파생 상품 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에 아직 미흡한 수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손실제한형 ETN 도입, 파생상품 위험평가 산정방식 개선 등

1 장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

(1) 공급측면 : 장내 파생상품 다양화 및 거래 용이성 제고

1. 상장절차 간소화

- (현황)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 사전승인 필요
- (개선)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개별 상품에 대한 상장여부는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
2. 다양한 파생상품 상장

- (현황) 해외에 비해 상장된 상품 수가 적고(31개), 주가지수 상품에 편중(17개)되어 있어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곤란
- (개선)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ETF 기초 파생상품, 초장기 국채선물, 미니달러선물, 해외 주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신규상품 상장 추진

3. 거래수수 등 조정

- (현황) KOSPI200선물 · 옵션의 거래수수가 글로벌 파생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세밀한 헤지 등이 어려움
- (개선) 거래수수 등을 글로벌 파생시장 수준*으로 인하
 - * (예) KOSPI200(50만 → 25만), 미니KOSPI200(10만 → 5만)

4. 개별주식옵션 활성화

- (현황) 개별주식 옵션상품의 다양성이 부족*하고 거래수수도 경직적으로 설정되어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곤란
 - * 종목 수('15년말 기준) : 개별주식 옵션 20개, ELW 64개
- (개선) 개별주식옵션 종목 수 확대, 거래수수의 탄력성 제고* 등 추진
 - * (예) 글로벌 거래소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별로 거래수수를 1 · 10 · 100 등으로 차등적용

(2) 수요측면 : 투자자 진입규제 정비 등

1. 투자자 진입규제 정비

- (현황) 기본예탁금, 교육의무 등 진입규제가 위험도와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측면
- (개선)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에 맞게 진입규제 등을 합리화
 - ①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'헤지 전용계좌' 도입
 - ② 옵션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'옵션 매수'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설정
 - ③ 기존 의무교육 30시간을 1단계 20시간, 2단계 10시간으로 나누어 단계별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 위주로 실시

< 개인투자자 파생시장 진입요건 개선(예) >

현황	구분	투자가능 상품	기본예탁금	기타 진입요건
	1단계	선물 (변동성선물 제외)	3,0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교육 30시간 • 모의거래 50시간
2단계	모든 선물·옵션	5,0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단계 거래경험 • 파생상품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	
개선	구분	투자가능 상품	기본예탁금	기타 진입요건
	헤지 전용 계좌	개별주식 및 주가지수 선물·옵션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교육 30시간 • 모의거래 50시간 * 단, 기존 교육 이수자·거래경험자 등은 면제
	1단계	선물(변동성선물 제외) 옵션매수	3,0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교육 20시간 • 모의거래 50시간
	2단계	전체 선물·옵션	5,0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교육 10시간 • 1단계 거래경험 • 파생상품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

2.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

- (현황) 해외 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내 증권사에 직접 접촉하여 계좌를 개설해야함에 따라 투자 제약 요소로 작용
- (개선) 글로벌 스탠다드*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(옵니버스 계좌) 도입
 - * 美, EU, 日, 홍콩 등은 해외증권사를 통해서도 각국의 장내파생시장에 참여 가능

2 장외 파생상품시장 위험관리체계 구축

(1) CCP 청산대상 상품 확대

- (현황) 국내 CCP를 통해 청산가능한 거래가 원화 IRS에 국한되어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제한적
- (개선) 시장상황 등 감안하여 자율청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
 - * (예) ('16.4Q)달러 IRS → ('17)NDF → ('18~)기타 외화 IRS, CRS, CDS

(2) TR 제도화

- (현황) 금감원·한은·거래소에서 각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보고체계를 운영함에 따라 종합적인 거래정보 파악이 곤란
 - * 우리나라는 거래소를 TR사업자로 선정하고 TF 운영 중('15.8~)
- (개선) 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TR 제도화 방안 마련

(3) 증거금(margin)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

- (현황)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으나, 대규모 시장충격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수단으로 부족
- (개선) 글로벌 스탠다드* 등을 감안하여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
 - * 미국 등 주요국은 非청산거래의 증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

(4)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검토

- (현황)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장투명성 및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거래플랫폼을 도입하거나 도입 검토 중
- (개선) 국내 시장상황, 국제권고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안 등 검토

3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

(1) ELS·DLS에 대한 리스크 관리

□ (현황) 특정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·DLS의 발행 급증으로 증권사 건전성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

□ (개선)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증권사 및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분관리 강화

① (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) ELS·DLS 발행·헤지운용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증권사·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

* 유동성·건전성 현황 등을 금감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조치명령권(法§416) 등을 통해 시정 조치

② (운용자산 구분관리) ELS 헤지운용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관리

* ELS 발행을 통해 조달·운용하는 모든 자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, 투자자산 요건 및 운용현황 정기보고 등 추진

(2) ELS·DLS에 대한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

□ (현황) 고령자 등 다수의 안전성향 투자자들이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 ELS·DLS에 투자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

□ (개선) 상품판매·운영단계별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

① (판매전 단계) ELS 등의 상품 위험분류기준을 점점*하고, 판매인의 상품 숙지의무(Know-your-Product Rule)** 강화

* 외부평가기관이 회사별 ELS상품 위험도 산정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·분석

** 판매회사가 상품내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험성 등을 판매직원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

② (마케팅 단계) 투자광고로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절차 및 검사 활동 강화

* (예) 수익률, 만기,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담은 SMS·이메일 홍보 제한 및 원금보장형 상품 표기 제한(협회 규정 개정)

③ (판매 단계) 부적합 투자자*에 대해서는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하고 청약 후 일정기간(예 : 2일) 내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부여

* (예) 부적합 확인서 제출대상자, 고령자 등

④ (사후관리 단계) 판매 후에도 투자자에게 주요 정보*를 지속 제공하도록 관련규정 정비

* (예) 기초자산 가격, 중도상환가격, 조기상환 순연, 발행사 신용등급 하락 등

(3) ETN 등 ELS 대체상품 활성화

□ (현황) ETN*과 파생상품 투자펀드**는 ELS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나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

*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이나 상장·거래됨에 따라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환매 가능

** 파생상품·파생결합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 보다 운용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관련 펀드 출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
□ (개선) ELS 대체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① (ETN 활성화) 투자자 수요에 맞는 상품(예 : 손실제한형 ETN)이 출시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등을 정비하고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안내

② (파생상품 투자펀드 활성화) 펀드의 위험평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 유도

IV. 향후 계획

추진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
1. 장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		
<input type="checkbox"/> 상품 다양화 및 거래 용이성 제고	거래소 규정 개정 및 신상품 개발, 시스템 개편	'16.4Q~
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자 진입규제 정비	거래소 규정 개정, 시스템 개편	'17.2Q
• 해지전용계좌 도입	거래소 및 협회 규정 개정	'17.1Q
• 개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	거래소 규정 개정, 시스템 개편	'17.2Q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		
2. 장외 파생상품시장 위험관리체계 구축		
<input type="checkbox"/> CCP 청산대상 상품 확대	거래소 규정 개정, 시스템 개편	'16.4Q~
<input type="checkbox"/> TR 제도화	법령 개정 등 제도화 방안 마련	'17.1Q
<input type="checkbox"/> 증거금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	가이드라인 마련, 시스템 개편	'17.1Q
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검토	타당성 조사 등 연구	'17.3Q
3.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		
<input type="checkbox"/> ELS-DLS 리스크 관리		
•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	금투업규정 및 세칙 개정	'17.3Q
• 운용자산 구분관리	금감원 및 협회 규정 개정, 시스템 개편	'17.1Q
<input type="checkbox"/> ELS-DLS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		
• [판매전] 투자상품 위험분류기준 점검 판매인의 숙지의무 강화	상품 위험분류기준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	'16.4Q~ '16.4Q
• [마케팅] 부적합 투자광고 송출 제한	협회 규정 개정, 금감원 검사	'17.1Q~
• [판매] 녹취 의무화	금투업규정 개정, 시스템 개편, 금감원 검사	'17.2Q
투자자 숙려제도 도입	금감원 행정지도	'17.1Q
• [사후관리]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	협회 규정 개정	'17.1Q
<input type="checkbox"/> ETN 등 ELS 대체상품 활성화		
• ETN 활성화	거래소 규정 개정, 시스템 개편	'17.1Q
• 파생상품 투자펀드 활성화	금투업규정 개정 ('16.9월 既입법예고)	'16.4Q

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